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(소병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49 발의연월일: 2020. 7. 28.

발 의 자:소병철・이규민・서동용

신정훈 · 서영석 · 김경만

김홍걸 · 위성곤 · 이개호

김회재・허 영・이형석

이원욱・소병훈・한준호

강병원 · 천준호 · 김승원

이병훈・홍정민・이수진

김진표 • 한정애 • 박광온

송옥주・정춘숙・최혜영

박 정ㆍ이장섭ㆍ김한정

김민철 • 주철현 • 정일영

홍기원 · 박홍근 · 민형배

유미향 • 문정복 • 유준병

앙이원영 · 오영훈 · 이해식

임오경 · 유동수 · 안규백

인재근 • 윤영덕 • 박완주

변재일 · 신동근 · 이용선

김용민 · 서삼석 · 송갑석

홍성국 · 김종민 · 이상민

이용빈 · 정필모 · 윤재갑

김철민 · 오영환 · 양정숙

홍영표 · 장경태 · 장철민 기동민 • 전용기 • 이상헌 도종환 · 김영진 · 조승래 정성호 · 이광재 · 박주민 신영대 · 김성환 · 양경숙 노웅래・설 훈・고영인 권칠승 · 정태호 · 박용진 박영순 · 정청래 · 우상호 이타희 · 권인숙 · 이낙연 김승남 · 이인영 · 김교흥 강훈식 · 남인순 · 진성준 한병도 · 홍익표 · 김워이 안민석 · 김두관 · 민병덕 전혜숙 · 박범계 · 송재호 김윤덕 · 송영길 · 진선미 서영교・윤호중・박성준 황운하 · 양기대 · 김병욱 조오섭 · 윤영찬 · 최기상 맹성규・고용진・최종윤 박재호 · 김병기 · 민홍철 최인호 · 김영주 · 김남국 이용우 · 이상직 · 김민석 양향자 · 강선우 · 김수흥 백혜련 · 김성주 · 전재수 임호선 · 이성만 · 임종성 강준현 · 박상혁 · 김영배 이학영・유기홍・김민기

전해철 · 고민정 · 김태년 윤후덕 · 허종식 · 윤관석 우원식 · 이수진비 의원 (152인)

제안이유

여수·순천 10·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'제주4·3사건'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임. 이로 인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입었음.

여수·순천 10·19사건은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에 따라 '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'으로 인정되어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직권조사하고 종합보고서를 통해 희생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국가에 권고한 바 있음.

하지만 당시 한정된 조사 기간과 관련 자료의 멸실 등으로 피해 신고접수와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어 여수·순천 10·19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가 신고접수와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이 필요한 상황임. 더구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게 요구됨.

또한 2020년 1월 20일 여순사건희생자재심재판에서 재판부는 국가를 대신하여 사과하면서,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

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 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아야 한다고 최종판결문에 적시한 바 있음.

이에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·순천 10·1 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여수·순천 10·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, 희생자와 그 유 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합당한 권리행사와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 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여수·순천 10·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,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·결정·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·순천 10·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둠(안 제3조).
- 다.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함(안 제4조).
- 라.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진술서 및 자료 제출 요구,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진상조사와 관련 자료 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,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

- 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 음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마.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함(안 제8조).
- 바. 누구든지 여수·순천 10·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고,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(안 제9조).
- 사.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 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,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함(안 제11조).
- 아.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중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 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와 간호 및 보조 장 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(안 제 16조 및 제17조).
- 자. 위원회의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(안 제19조).

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여수·순천 10·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, 합당한 권리행사와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여수·순천 10·19사건"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 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'제주4·3사건'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,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·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, 전라북도,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.
- 2. "희생자"란 여수·순천 10·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,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, 수형자(受刑者)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- 3. "유족"이란 희생자의 배우자(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.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

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
- 제3조(여수·순천 10·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) ① 여수·순천 10·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심사·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,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·순천 10·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
 - 2.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·결정에 관한 사항
 - 3.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
 - 4.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
 - 5. 위령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
 - 6. 여수·순천 10·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
 - 7.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한 사항
 - 8. 집단학살지,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·수습 등에 관한 사항
 - 9. 희생자 및 유족의 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
 - 10.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

항
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⑤ 위원회는 심의·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,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.
-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
-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사무처)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.
 -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직원을 두며,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
 -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

- 령이 임명하고, 4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.
-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⑤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- 제5조(진상규명 신청) ① 희생자,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및 그 밖에 신고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,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한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여수·순천 10·19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
 - 2. 여수·순천 10·19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 청

취

- 3. 여수·순천 10·19사건과 관련된 사람 및 관계 행정기관, 단체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
-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사람,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.
- ④ 정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 또는 물건을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 하여야 한다.
- ⑤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여수·순천 10·19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7조(동행명령)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여수·순천 10·19사건의 진실에 관하여 중요한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 원장이 서명·날인한다.
 - 1. 대상자의 성명·주거. 다만,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,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 기재를 생략할

수 있다.

- 2.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
- 3. 동행할 장소
- 4. 동행명령장 발부연월일
- 5. 동행명령장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 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
- 6.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과한다는 취지
-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.
- ④ 동행명령장은 사무처 직원이 집행하도록 한다.
-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(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)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사무처 직원의 위임에 따라 교도관리가 행한다.
-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는 소속 부대장은 사무처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.
- 제8조(진상조사보고서 작성) ① 위원회는 제6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·순천 10·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의 안전보장, 국

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제9조(조사대상자의 보호 등) ① 누구든지 여수·순천 10·19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.
 - ②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라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 - ③ 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라 진상조사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신문·잡지·방송(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), 그 밖의 출판물을 통하여 조사대상자 및 그의 가해행위와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내용 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비밀누설의 금지) 위원회 위원이나 그 직(職)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진상규명조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1조(피해 및 진상규명 신고처 설치 및 공고)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,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처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12조(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) 여수·순천 10·19사건 당시 호적부 소

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.

- 제13조(위령사업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수·순천 10·19사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위령묘역 조성
 - 2. 위령탑 건립
 - 3. 여수·순천 10·19사건 사료관 건립
 - 4. 위령공원 조성
 - 5. 평화 등 인권교육
 - 6. 그 밖의 위령관련 사업
- 제14조(재단지원 등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 - 1. 위령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·관리
 - 2. 추가 진상규명조사의 지원
 - 3.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

- 4. 위령공원 조성 및 관리
- 5.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 지원 사업 등
- 6. 그 밖에 관련 사업
-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재단의 운영은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④ 그 밖에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(기탁금품의 접수) ① 제14조에 따른 재단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(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) ① 국가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평상시 간호 또는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압류할 수 없다.
 -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신청) ① 희생자 또는 그 유족

- 으로서 의료지원금·생활지원금(이하 "지원금등"이라 한다)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지원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신청은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결정서의 송달) 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지원금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- 제19조(재심의 등) ① 제3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은 제18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이때 재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위원회의 결정(재심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)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.
- 제20조(벌칙) ① 타인의 명예를 해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허위로 한 사람은 3년 이하의

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제1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) 「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」에 따른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상규명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.

제3조(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) 여수·순천 10·19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「민법」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